

영국의 주거복지 관련 법제와 시사점

I. 들어가며

II. 영국의 주요 주거복지제도

III. 영국의 주거급여제도

IV. 마무리

김 태 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특집]

2013년 새 정부의 주요 과제 중 하나는 “복지”입니다. 이에 최신외국법제정보는 가장 중요한 분야로 언급되는 ‘주거’, ‘보육’, ‘의료’, ‘교육’에 걸쳐 주요 외국의 법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I. 들어가며

주거는 의식주의 하나로 사람이 생활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조건 중의 하나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주거복지와 관련해서 양적 지원정책(혹은 공급자 중심)인 임대아파트 건설을 중심으로 주거지원정책을 운영해 오고 있었다. 그러나 임대아파트 건설만으로는 저소득층 혹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욕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없어, 여러 형태의 임대아파트(보증금자리주택, 매입임대 및 전세 등)와 주거비용(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한 자가구입, 전세 임대를 위한 융자제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을 함께 시행해 오고 있다. 특히 연금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국내 여건을 고려하여 주택을 담보로 노령계층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역모기지론제도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빈곤층을 위한 대표적인 주거지원제도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주거급여제도가 있다. 동 제도는 빈곤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현금 및 현물을 지원하고 있는 제도로 빈곤층 주거안정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는 생계비와 함께 지원됨으로써 주거지원보다는 생활비 보조의 형태로 사용됨으로써 실질적인 주거급여로서의 역할은 수행해 오지 못하고 있다.

2013년에 들어서 신정부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지원정책으로서 주택바우처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급여 중 하나인 주거급여를 연계하여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¹⁾. 주택바우처제도와 주거급여의 개편은 그동안 주거복지의 주요 정책수단이었던 공공주택 공급에서 주거복지 지원수단의 다양화를 모색하고 저소득층의 실제적인 주거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점에서 기존 정부들과는 차별되는 발전된 주거복지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미 유럽국가와 일본에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수당 또는 주거급여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이들 주거복지제도는 국민생활과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여기서는 신정부에서 주요한 복지정책의 하나로 대두될 주택바우처 또는 주거급여의 안정적 시행과 정착을 위해 외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주거복지제도 중 하나인 주거급여제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대상국가로는 영국의 주거복지제도와 주거급여에 대해 운영실태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현재 영국의 경우 'Big Society'를 추구하고 여러 복지제도들에 대한

1) 국토해양부를 중심으로 주택바우처제도가 그동안 준비되어 왔지만, 예산상의 문제로 진행되지 못하다가 최근 들어 동 사업의 사전적 준비를 위한 시범사업 관련 예산이 2013년 정부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더불어 지난 대선기간 중 발표된 신정부의 주택공약 중의 하나로 주거바우처 사업이 포함되어 있었다.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주거복지제도 확대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장에서는 영국 주거복지제도의 역사와 주요 주요 주거관련 복지사업들을 살펴보고, 3장에서는 대표적 서민주거지원제도인 주거급여와 관련된 사항들을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특히 최근 영국의 복지개혁 동향을 통해 주거급여에 대한 변화가 있었다는 점에서, 이들 내용을 함께 담아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영국 주거복지제도가 국내에 주는 시사점을 다루고자 한다.

II. 영국의 주요 주거복지제도²⁾

영국에서 주거복지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 시점은 산업혁명을 거치면서였다. 이 시기 많은 사람들이 일을 찾아 도시로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열악한 주택 및 주거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특히 비위생적인 주거환경으로 인한 전염병의 발생은 개인의 삶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생산성 약화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주거복지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책사안으로 대두되었다. 영국정부에는 1848년 「공중위생법(Sir Shaftsbury's Act)」을 통해 주택에 대한 최소면적기준의 설정과 비위생적인 주택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다. 이후 1851년 「숙박주택법(Lodging Housing Act)」, 1866년 「노동자계급 숙박법(Labouring Classes Houses Act)」 등이 제정되었으며, 실질적으로 정부차원의 주택건설이 의무화되는 법은 1890년 제정된 「노동자주택법(the Housing of the Working Classes Act)」을 통해서였다(박신영, 2007). 하지만 이 시기 주거관련 법은 마련되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대부분의 주택을 민간부문에 의존하고 있었으며³⁾, 본격적으로 정부가 책임을 지고 주택건설을 시작한 것은 세계대전으로 인한 주거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1919년 「주택 및 건설계획법(Housing and Planning Act, 일명 Addison Act)」부터이다. 동 법을 통해 중앙정부의 보조

2) 본 절은 김종철(2003), '영국주택법제 개관', 『주택도시』 제77호, 한국토지주택공사; 박신영(2007), '공공임대주택정책 비교', 『Huri Focus』 제25호, 주택도시연구원과 조소영(2012), 「주택 및 주거서비스」,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영국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주요내용을 기초로 정리한 것이다.

3) 영국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주체는 정부 및 민간 이외에 주택협회(Housing Association)를 들 수 있다. 주택협회는 저임대료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비영리단체로 오랜 전통을 지니고 있다. 여기에는 Society, Trust, Association, Company 등이 포함되며, 1956년 주택법에서 이들 단체를 Housing Association(HA)로 포괄하였다. 이후 1985년 주택협회법(the Housing association Act)을 제정함으로써 주택공급에 있어 주요한 위치를 점유하게 되었다. 주택협회가 주택을 공급하는 대상은 흑인 및 소수민족집단, 노숙자, 노인, 공공부문 주요노동자(경찰, 간호사, 교사 사회복지사 등), 여성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박신영, 2007).

하에 지방정부가 책임을 지고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체계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은 피폐해진 도시와 농어촌의 재생과 국민복지 향상을 위해 베버 리지가 작성한 보고서(1942년)를 토대로 빈곤, 주택, 의료, 교육 등에 대한 국가개혁을 시도 하였다. 이 중 주택지원과 관련하여 도농계획법(The City and Country Planning Law, 1947년)이 만들어지면서 주택 및 주거와 관련된 일련의 정책들이 새롭게 시행되었다(조소영, 2012). 1970년대까지 영국의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및 주거지원정책은 공공주택 공급확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나, 이는 오히려 빈곤층의 집중과 주거환경 불량 및 우범지역으로 변모해 가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에 대해 보수당 정권에서는 1980년대 주택사유화 및 민간주택 건설을 도모하였지만 이 역시 공공부문의 주택 공급감소라는 문제를 야기하였다.

2000년 신노동당 정부에서는 공공주택 공급보다는 커뮤니티 개념에 입각한 계획시스템을 도입하고 커뮤니티에 대한 자율성 인정, 양질의 주택공급을 유도하였으며, 2010년 집권한 보수당 정권에서는 'Big Society'라는 개념하에 지역주민의 자율적인 동참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⁴⁾. 이 외에도 임대주택에 대한 상한금을 설정하였으며, 기존의 주거 공급정책보다는 소비자 보호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주거정책을 전환하고 있다.

영국의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지원정책은 크게 공공주택 공급과 주거보조금 지원정책을 들 수 있다. 먼저 공공주택 공급정책으로는 임대주택 공급 이외에, 첫째, 생애 첫주택 구매지원사업(HomeBuy Direct)으로 무주택 서민 중 처음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에게는 시장가치의 30%까지 대출해 주는 것으로 정부와 주택사업자가 절반씩 대출금을 부담하고 지원대상자는 6년째부터 대출금을 상환하는 제도이다. 두 번째는 저당위기 구제사업(Mortgage Rescue)으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대출은행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주택에 대해 구제사업기금을 통해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출자가 주택을 재소유할 수 있도록 지원

4) 큰 사회(Big Society) 건설은 노동당을 대신하여 2010년 정권을 잡은 보수당의 캐머런 총리에 의해 주장된 것으로 정부주도의 정책에서 민간과 커뮤니티가 중심이 되는 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의 권력을 지방정부로 이양하고, 공공서비스를 민간인 시민단체에 위임하고, 사회적 경제를 모토로 하는 협동조합(우리나라는 2011년 협동조합기본법이 성립되어 2012년 12월부터 자유로운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하게 됨), 사회적 기업, 자선단체 등을 육성 지원하며, 지역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며, 정부의 행정정보를 민간에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알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Big Society의 기초는 복지정책에도 영향을 미쳐 복지수급자들이 복지합정에 빠지지 않도록 근로연계형 또는 고용과 복지가 연계되도록 하는 복지정책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하는 것이다. 이 외에 저가주택 구매지원사업(Low-cost Home Ownership), 도시재생사업(Urban Renaissance Plan)⁵⁾, 공동주택 질적 개선사업(Decent Homes)⁶⁾ 등을 통해 저소득계층의 주거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다.

주거보조금 정책은 우리나라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가구를 대상으로만 일부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 주거복지정책의 핵심과제라 할 수 있다. 영국의 주거보조금제도는 저소득층 공공주택 임대자를 위한 주거급여(Housing Benefit, HB)와 민간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관할지역에서 지원하는 지역주거수당(Local Housing Allowance, LHA)이 있다. 이 제도들은 다음 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이 외에 저소득층을 위한 직접적 주거지원제도는 아니지만 겨울철 추위 속에서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난방비 지원제도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영국에서 지원하고 있는 난방비 지원제도는 Cold Weather Payment와 Winter Fuel Payment가 함께 운영되고 있다. 먼저 Cold Weather Payment는 겨울철, 60세 이상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기온이 섭씨 0°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예보될 경우 해당지역 대상자들에게 자동적으로 7일에 £25를 지원하는 냉한기 난방보조금제도이다. Winter Fuel Payment는 60세 이상 노인에게 실업 유무와 상관없이 개인의 경제력에 따라 1회에 한해 난방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날씨 변동과는 상관없이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최근 유가 및 난방비용의 상승으로 저소득층 및 노인계층을 위한 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복지 확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빈곤층을 위한 에너지 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인 최저생계비에 일부 반영되고 있을 뿐 에너지복지에 대한 지원은 미약하다 할 수 있다. 노령계층을 위해 경로당 및 마을회관 등의 난방비를 겨울철에 한해 지원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지만 항상 재정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주거복지의 확대와 더불어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복지 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필요할 것이다.

5) 도시재생사업은 지역 커뮤니티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신규주택을 공급함에 있어 저소득층에게 불리하게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저소득층과 비저소득층이 같은 커뮤니티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교육, 의료 시설 등을 함께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6) 동 사업은 공공임대주택의 슬럼화를 방지하고 주거환경 불량문제 해소를 위해 주택건설은 최저주거기준 이상을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Ⅲ. 영국의 주거급여제도(Housing Benefit: HB)⁷⁾

영국의 주거급여제도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돕고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주거협회 소관 주택 및 민간주택 거주자들로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보조해 주는 제도이다. 즉 기본적으로 자가에 거주하고 있지 않으면서 임대료를 납부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는 주거보조비 제도는 영국의 주택재고율이 100%를 넘어선 1972년 주택금융법(the Housing Finance Act)에 의해 주거보조금제도가 의무화되었으며, 1982년 주거급여법(the Housing Benefit Act) 이후 임대료 할인, 임대료 급여, 재산세 감면이 하나로 통합되어 시행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현재 방식의 주거급여제도는 1988년을 기준으로 정착되기 시작하였다. 영국 주거급여의 특징은 실제로 주거비에서 사용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임차인이 지불할 수 없는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다. 2008년 공공부조 개혁 당시 주거급여도 수급 형평성, 행정효율화, 수급자 선택권 및 책임성 강화, 제도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에게 주거급여를 직접 제공하는 형태의 지역주거수당(LHA)을 사적 영역의 임차인에게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형태로 변모하였다.

주거급여제도는 영국의 공공부조제도인 Income Support(IS)를 받고 있거나 IS 수급자는 아니지만 저소득층인 사람들이 민영 혹은 공공주택에 임차인으로 거주하는 경우 그 임대료를 보조하는 주거비지원 정책으로, 정책담당은 지역사무소(local council)가 맡도록 하고 있다. 즉 주거급여에 관한 사항은 영국 사회보장부(Department for Work & Pensions)에서 총괄하고 있으며, 업무집행은 지역별 지역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주거급여는 임차인의 임대료에 대한 지원이므로 자가가구가 주택을 소유하기 위한 모기지 비용이나 기타 주거관련 대출금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로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자가가구 보유자의 경우에는 주거급여제도의 대상이 아니며, 이들은 별도의 주거지원제도(주택구매지원사업, 질적(주택개량) 개선 사업 등)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영국 주거급여제도의 수혜자격은 가구주 소득이 일정소득 이하의 저소득 임차인(18~64세)을 대상으로 지급되며, 주택 형태, 고용상황(실업과 무관), 다른 급여를 받고 있는 것과 무관하게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형태가 공공주택, 주

7) 본 절은 이태진 외(2009), 『주거급여와 주택마우처 지원의 연계를 통한 주거정책 개선방안연구』, 정책 2009-13,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Department for Work & Pensions(2012), *Housing and heating costs*, Citizens advice bureau(홈페이지), *Housing benefit*의 주요내용을 기초로 정리한 것이다.

택협회 소유 혹은 민간주택의 여부와 상관없이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소득산정 시 가구주와 배우자의 자산이 6,000파운드를 넘을 경우, 동 자산으로부터 일부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고 가정하게 되어 줄어든 주거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가구주와 배우자의 연령이 60세 이상으로 연금수령 연령에 도달하고 1만 파운드 이상의 자산을 가진 경우 역시 동 자산에서 일정부분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고 가정하여 소득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임대가구 중 ‘가구 소득·저축·투자 대비 임대료 비율’로 산정하되, 가구별 가구원 구성특성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다. 즉 연령 및 가구원수 등을 반영하고, 실업유무와 무관하게 지원기준 금액 이하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단, 아래의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야 주거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 1만 6,000파운드 이상 저축금액 보유자 : 노인, 특정 지급보장자(Guarantee credit)는 제외
- 가족구성원과 가까운 자(근친 등)의 집을 임대하는 경우
- 전임학생 : 장애 혹은 어린이의 보호자는 예외
- 불법체류자, 불법이민자 및 망명자와 그 배우자
- 기타 제한 요건 : ① HB수혜자와 동거하는 경우(동거자 중 한 명만 지급), ② 35세 이하 독신자(공동주거시설 원룸, 스튜디오 허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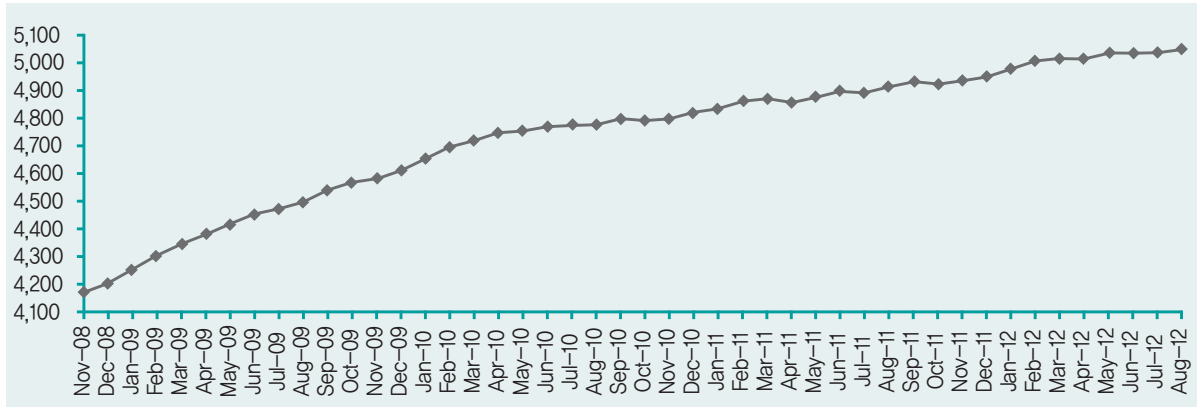
만약 신청자가 소득보조(Income Support), 소득기초구직급여(Jobseeker's Allowance) 혹은 소득관련 고용 및 지원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이들 지원금액은 소득 또는 자산에 자동적으로 포함되도록 하고 있으며, 이들 지원대상자들은 주거급여의 최대금액을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60세 이상의 연금연령에 도달한 경우에도 주거급여의 최대금액을 받을 자격이 주어지고 있다.

주거급여제도의 신청자격을 가진 수혜자가 지역사무소(Local council)에 주거급여를 신청하면, 신청자의 임대요구와 신청주택의 ‘임대수혜기준(eligible rent)’을 비교하여 주거급여의 지급 금액을 결정하고, 급여는 수혜자에게 직접 입금되도록 하고 있다. 만약 주거급여를 받게 되는 신청자가 임대료에 대한 추가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기관에 추가적 신청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자체적으로 재량적 주거지원비(Discretionary Housing payment)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Dep. for Work & Pensions, 2012).

영국의 주거급여 수혜규모를 살펴보면 2008년 12월 기준으로 420만 가구에서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 2월 처음으로 5백만 가구를 넘어섰으며, 동년 8월에는 505만 가구가 지원을 받고 있었다. 이 중 약 67.2%인 339만 가구가 공공임대 등의 사회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민간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는 32.8%인 165만 가구에 달하고 있다.

[그림] 영국 주거급여 수급현황(2008~2012년)

(단위: 천가구)



자료: National Statistics, DWP statistical summary

주거급여의 급여수준은 신청자의 임대료 전체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며, 나이(신청자 및 그 가족구성원), 가족구성 및 가구원수, 가족 내 장애인 유무 등과 같은 개인적 요소와 가구소득 또는 기타보조금, 거주 주택 규모 및 임대료 수준에 따라 급여에 차이를 두고 있다. 또한 주거급여를 지원함에 있어 주거와 관련된 비용인 광열수도비, 전기료 등에 해당되는 금액은 산정에서 제외하고 순수하게 임차료를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급여액은 2008년 4월부터 민간임대에 거주하는 경우는 LHA를 이용하여 산정하며, 사회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는 LHA가 적용되지 않고 적정임대료(eligible rent)와 같은 수준을 받게 된다. LHA는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최대금액으로 신청자의 거주지역과 거주하는 주택의 방수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도록 하고 있다. 가족구성원 중 아동수당, 노인, 장애인 무능력급여 및 소득지원 등 동거가족 구성원에 따른 특정기금도 반영하고 있다. 임대 중 수입, 고용, 가족구성원(예를 들어 자녀의 연령이 커서 독립적 생활이 가능한 경우 등), 임대주택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화요인이 발생하면 주거급여액을 재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2012년 1월부터는 35세 이하 독신으로 자녀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주거시설의 원룸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방 하나를 임차하는 것을 기준으로 주거급여액을 산정하고 있다. 단 22세 이하의 위탁종결(care leavers)자, 장애인 및 노숙인 거주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25세에서 34세의 사람들은 동 조항에서 제외되도록 하였다(Citizens advice bureau, 2013).

2011년 9월 기준으로 주거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490만 가구를 기준으로 주당 급여수준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75.5%인 약 370만 가구가 주당 100파운드 미만을 수급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100파운드 이상 1,000파운드 미만이 23.9%로 약 118만 가구이었다.

[표] 영국 주거급여 수급현황(주거급여 수준별, 2011년 9월기준)

(단위: 가구, %)

구분	가구	
전체가구	4,934,110	100.0%
주당 0~£99	3,727,360	75.5
주당 £100~£999	1,179,620	23.9
주당 £1,000 이상	140	0.1
명확하지 않음 ¹	26,990	0.5

주: 1) 일주일 미만의 기간 동안 급여를 수급한 경우들을 의미

자료: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http://www.dwp.gov.uk/docs/foi-3888-2011.pdf>)

주거급여액은 이와 같은 방식에 의해 산정되고 있지만, 지역별로 주거급여액에 상한을 두고 있으며, 이를 넘어가지 않도록 하고 있다(2011년 4월 이후). 실제 주거급여 신청자의 주택이 사적으로 임차되었거나, 가구 구성원의 연령, 성별 및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거주가 가능한 가구원수보다 큰 집에서 거주하거나, 거주주택의 임대료가 주변 시세에 비해 높다고 판정되는 경우에는 급여액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상한액은 지역기관에서 설정하고 있으며, 그 금액은 매년 수정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1년 4월 기준(런던 지역)으로 ① 방 하나(one-bedroom)는 한 주당 £250, ② 방 두 개(two-bedroom)는 한 주당 £290, ③ 방 세 개(three-bedroom)는 한 주당 £340, ④ 방 네 개(four-bedroom)는 한 주당 £400로 제한을 두고 있으며, 최대 주당 £400 이상은 지급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주거급여에 대한 제한조치는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영국 정부의 사회보장개혁과 맞물려 2013년 4월부터는 16~64세 사이의 영국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급여에 대해서는 상한액이 설정되어 운영될 예정이다. 주거급여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사항은 2011년 4월부터는 수혜자 및 그 배우자 중 한 명이 장애를 가지거나, 보호가 필요한 사람으로 간병인에 의한 보호가 필요할 경우, 간병인들이 추가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가적인 주거급여(extra housing benefit)를 제공하고 있다.

영국의 임대주택의 일부는 고용정책의 일환으로 적용되고 있어 직장에서도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직장에서 이동, 휴·사직, 재취업 등의 변동상황이 발생하면 주거급여에도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다.

IV. 마무리

지금까지 영국의 주거복지관련 법제도의 변화와 주거복지의 주요정책 수단 중 하나인 주거급여(Housing Benefit)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영국은 우리나라와 같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아파트를 공급하는 것 이외에 주거보조금제도로서 주거급여제도를 오랜 기간 운영해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를 대상으로만 주거급여가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주거급여제도는 운영되지 않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부족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복지는 주로 공급 중심의 정책이었다. 하지만 1990년대 및 2000년대 들어 주택 및 토지 가격의 상승으로 적기에 많은 양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한계에 도달하였다. 또한 2008년 금융위기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반대로 서민층의 주요 주거수단이었던 전세가격이 급등하여 전세를 살면서 월세를 부담하는 일명 반전세가 늘어나게 되었다. 주택보유자들은 과거 주택가격 상승을 통해 자산을 늘려 왔지만, 최근 부동산 가격으로 주택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없음에 따라 기존 주택을 월세로 전환함으로써 임대수입을 늘리고자 하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위와 같은 일련의 주거부문에서의 변화는 저소득 및 주거빈곤층의 주거불안을 증대시킨다는 점에서 정부의 임대주택 공급중심 주거복지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전월세가격은 서민층이 부담하기에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으며, 과도한 주거비 부담은 다른 소비지출을 감소시키는 연쇄반응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그동안 검토만 되어 오던 주거급여 혹은 주거수당의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마침 새로운 정부에서도 서민층의 주거비를 보조해 주는 주택바우처제도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거복지측면에서는 긍정적 발전이라 볼 수 있다.

영국은 오랜 기간 중앙정부는 계획수립을, 집행은 지방정부가 책임을 지는 등의 협력을 통해 주거급여제도가 시행되어 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여러 복지급여(주거급여 포함) 제도에 대한 상한을 두는 등 제도적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주택바우처제도의 도입은 향후 많은 재원의 소요와 제도운영을 위한 대상자 선정 및 급여조건, 기존 제도와의 관계설정(국토해양부의 임대주택건설, 보건복지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의 주거급여 등), 새로운 전달체계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많은 연구와 시범사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2012.

이태진 외, 『주거급여와 주택바우처 지원의 연계를 통한 주거정책 개선방안연구』, 2009.

김종철, '영국주택법제 개관', 『주택도시』 제77호, 한국토지주택공사; 2003.

박신영, '공공임대주택정책 비교', 『Huri Focus』 제25호, 주택도시연구원, 2007.

National Statistics, DWP statistical summary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http://www.dwp.gov.uk/docs/foi-3888-2011.pdf>)